

개정(안) 신규대비표

□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

현 행	개 정 (안)	사유
<p><u>제5조(일괄입찰·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) <삭제></u></p>	<p><u>제5조(순공무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) ①</u>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“순공무원가”라 한다)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재료비·노무비·경비</p> <p>2.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</p> <p>② 예정가격 중 순공무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</p> <p>1. (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) × (예정가격 / 예비가격기초금액)</p> <p>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</p> <p>③ 예정가격 중 순공무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</p> <p>1. (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무원가) × (98 / 100)</p> <p>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</p>	<p>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 반영</p>
<p>[별지 #4] <개정 2020.3.18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(전문공사 및 전기·정보통신·소방·시설·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)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3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<p>[별지 #4] <개정 2020.5.27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(전문공사 및 전기·정보통신·소방·시설·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)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3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

현행			개정(안)			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○ 신인도 (+4점) -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인도 평가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심사항목</th> <th>등급 및 평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건설재해 및 제재처분</td> <td>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일자리 창출기업</td> <td>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</td> <td>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</td> <td>+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	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일자리 창출기업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	<p>○ 신인도 (-1점 ~ +4점) -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인도 평가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심사항목</th> <th>등급 및 평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건설재해 및 제재처분</td> <td>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일자리 창출기업</td> <td>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</td> <td>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</td> <td>+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일자리 창출기업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
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자리 창출기업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자리 창출기업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주) 사전심사기준 [별표 3] 신인도평가 주 2)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		<p>주) 사전심사기준 [별표 3] 신인도평가 주 2)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[별지 #5] <개정 2020.3.18.></p> <p>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2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인도(+4점) - [별지 4]에 따라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	<p>[별지 #5] <개정 2020.5.27.></p> <p>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2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인도(-1점 ~ +4점) - [별지 4]에 따라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	
<p>[별지 #6] <개정 2020.3.18.></p> <p>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(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,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)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1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인도(+4점) - [별지 4]에 따라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	<p>[별지 #6] <개정 2020.5.27.></p> <p>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(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,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)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1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인도(-1점 ~ +4점) - [별지 4]에 따라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	
<p>[별지 #7] <개정 2020.3.18.></p> <p>추정가격 2억원(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, 전문공사는 1억원)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(경영상태)평가(1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인도(+4점) - [별지 4]에 따라 평가하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	<p>[별지 #7] <개정 2020.5.27.></p> <p>추정가격 2억원(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, 전문공사는 1억원)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(경영상태)평가(1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인도(-1점 ~ +4점) - [별지 4]에 따라 평가하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	